

대구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나30835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

###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나30835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19가단22132 판결

###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여인협

**피고,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경

**변론 종결** 2021. 8. 25.

**판결 선고** 2021. 9. 29.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19가단22132 판결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57,453,17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453,1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은 2014.경 D의 펌프카 사업에 기사로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2016.경 펌프카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B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D가 그동안 지급한 차량대금 및 영업용 차량번호 값 등으로 B이 D에게 4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이에 B은 2017. 3. 14. 위 47,000,000원을 2017. 12. 31.까지 변제하고, 60mDM펌프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은 B 단독으로 운영하며 그 이후 청구와 결재는 B이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나. D는 2017. 7. 26.경 원고에게 위 4,7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8.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B은 2018. 1. 30.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8. 2. 1. 접수 제194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D는 이미 원고에게 양도한 위 채권을 소송을 통하여 추심하기로 하고 2018. 6. 4.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8. 6. 7. D가 원고가 되어 B에 대하여는 대여금 청구를,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2237호, 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

마. 위 소송사건의 제1심법원은 원고(D)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B 및 피고가 항소하였다(같은 법원 2019나3804호). 항소심 절차에서 B 및 피고는, 위 대여금이 이미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주장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0. 6. 10.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D와 원고는 매우 친밀한 관계로서 상당 기간 동안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여왔으며,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해 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대해 D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D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2018. 6. 7.)에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2019. 11. 28.)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채권 추심 업무를 위임받았던 Q가, D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위 소송에서 B 및 피고의 '채권양도 항변'을 통하여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 직후 2019. 11. 2. D가 사망하자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여 2019.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고지하였고 그 때 비로소 원고는 B 및 피고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2019. 11. 28.)에 제기된 소로써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는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D의 사망 이후에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Q 작성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는 늦어도 전 소송이 제기될 당시(2018. 6. 7.)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2019. 11. 28.)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차용증 원본이 아닌 사본(갑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2020. 7. 22. 제1심 변론기일에서 차용증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차용증은 채권 양수 시에 받았다가 추심을 위한 소송제기에 관해 상담하고자 D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이를 위 사무실에 맡겨 두었으며, 이후에 D가 이를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아 가서 현재 원고는 차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전 소송 제기 이전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추심에 관하여 D와 긴밀히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D는 2017. 7.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여 주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데, B은 2018. 1.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D는 그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8. 6. 7. 자신이 원고가 되어 B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지급 및 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D는 위 소 제기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가량이 경과한 2019. 11. 2. 사망하였다. 즉,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해준 후에 10개월이 넘게 경과한 시점에 원고를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고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은 소 제기 시점부터 D 사망 전까지 1년 5개월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은 진정한 권리자인 원고가 위 소송계속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가, D가 원고에게 이에 대해 아무런

통지조차 해주지 않았다는 Q의 진술 내용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③ Q는 전 소송 계속 중에 항소심에서 B 및 피고가 '채권양도 항변'을 하여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9. 11. 2. D가 사망하고 나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추심 업무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원고에게 연락을 취해 2019. 11. 13. 원고와 만나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고지해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Q가 실제로 전 소송에서 D의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Q로서는 D가 사망한 직후에 D의 상속인들에 대한 수계절차를 밟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했을 텐데, Q의 주장대로라면, Q는 D가 사망한지 2주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그전까지 전혀 교류가 없던 원고를 만나 이 사건 증여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했고, 원고는 Q로부터 이를 고지받자마자 약 2주일이 경과한 2019. 1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D가 사망하자마자 Q가 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원고는 이에 신속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위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Q가 교류가 전혀 없었고 원고가 전 소송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는 Q의 진술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되지 않는다.

④ 더군다나 Q의 진술에 따르면 Q는 전 소송의 항소심에서 채권양도에 관한 주장이 나와서 채권양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D와 상의하지도 않고 있다가 D의 사망 이후에야 비로소 D의 유족들을 통하여 원고의 연락처를 알아내 원고에게 연락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Q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D의 유족들조차 원고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원고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⑤ D가 전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9. 11. 2. 사망한 이후 D의 상속인들인 R, S이 전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이후 대구지방법원(2019나3804)은 2020. 6. 10.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B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Q는 전 소송 계속 중에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사실을 고지해주었다고 진술하는바, D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임을 Q와 법무사 E가 알게 되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Q나 T가 D의 상속인들에게 전 소송을 수계하게 하여 7개월 동안이나

원고가 제기한 소송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위 전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한 경위를 이해하기 어렵다.

⑥ 원고는 2020. 7. 22.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D의 소 제기 시점에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게 되어 D의 전 소송 제기를 돕기 위해 차용증을 맡긴 후에 차용증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차용증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원고는 D가 사망한 이후에 Q를 통하여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위 진술을 반복하면서도 차용증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새로운 해명을 제시한 바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B과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2018. 6. 7.경)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소(2019. 11. 28.)로서 부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서범준**

**판사박치봉**

**판사서영애**

**별지**